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가 덕 도 신 공 항 건 설 공 단 법 시 행 령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 나. 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 다.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 라. 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교부) ①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4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제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공단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계 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단위사업의 총부채} \times \frac{\text{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text{단위사업의 총자산}}$$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출자 등)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
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3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
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
(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
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
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4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5조(채권 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추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신공항건설사업
의 시행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1.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경우
3.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하는 경우
4.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연 락 처	(044) 201 - 5209